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2043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박기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진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559,551원의 범위 내에서 51,172,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16. 주식회사 C(이하 'C')와 D 차량에 관하여 취득원가 140,430,424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2,232,100원(단, 첫 회는 1,766,876원),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한 자동차 운용리스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C는 2022. 7. 5.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3. 1. 30. 원고에게 리스차량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1) 연체 리스료 15,624,700원(2022. 7.분부터 2023. 1.분까지) 및 2022. 상반기 자동차세 389,870원, 연체료 1,261,380원, 2023. 1. 4.부터 2023. 1. 30.까지의 리스료 1,382,400원과 이자 672,360원, 2) 중도반납 수수료 49,289,816원, 3) 법조치 비용 2,907,545원, 원상복구비 880,000원, 2022. 하반기 자동차세 370,370원 합계액에서 선납금 21,606,000원을 공제한 51,172,4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아들 E이 운행할 차량(F)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E을 통해 C의 실질적 대표 G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이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서가 피고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반한다.

3. 판단

가. 연대보증계약 성립 여부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2)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11. 16. 피고의 아들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 뿐 아니라 H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F에 관한 자동차 운용리스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동의하여 체결한 자동차 리스계약이 따로 있었고 그 계약을 위하여 아들 E에게 인감을 건네주는 한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권한을 준 적이 있다면, E 또는 G이 그렇게 받은 인감과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피고 도장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이라는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원고 직원과 피고 사이의 2020. 11. 16.자 통화 녹취록(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원고 직원과 피고 사이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직원의 질문이나 설명 내용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취지의 대답만 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한 것인지 의문이다. 계약 목적인 리스차량을 확인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원고 직원이 먼저 정확한 모델명을 말해주고 피고는 수궁하는 방식으로 확인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계약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질문을 함으로써 피고가 계약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직원: “제조사 어디 거인지는 알고 계실까요?”

피고: “‘I’ 어찌고 저찌고 했던 것 같은데?”

원고 직원: “J 제조사의 D”

피고: “예예. J”

나) 피고가 “리스계약서 직접 작성하시고 인감 날인해주신 거 맞으시고요?”, “인감 그거 해주신 거 맞으세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예”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일과 같은 날 다른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J사에서 제조하는 차들의 구체적인 모델명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대화에서도 피고는 ‘F’의 모델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J 제조사의 D”라는 명칭을 듣고서도 ‘J’라는 기준으로만 동일성을 식별하고 있다)을 감안하면, 피고는 그의 의사로 체결한 다른 자동차 운용리스계약에 관한 통화라고 생각하고 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리스계약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서 체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금액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